

제 2014-5 호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·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4년 4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신고사항
최 * *	박 * * 1968.11.01	속초시 선사로5길43, 203호(조양동)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이 처리되며,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장순해, 문의전화 : 033-631-1406)

2014년 4월 3일

조 양 동 장 (인)

